



학교법인 광운학원
2022학년도 제1차 이사회 회의록

회의소집통보일자		2022. 04. 08.(금)	
이사정수	7명	재적이사	7명
감사정수	2명	재적감사	2명

1. 일 시 : 2022년 04월 18일(월) 14:00
2. 장 소 : 이사회 회의실 (원격영상회의 병행)
3. 참석임원 :

구 분	인 원	성 명
참석 이사	7명	조선영(이사장), 이종수, 이종민, 김기영, 오승훈, 김영만, 배일환
불참 이사	0명	
참석 감사	2명	배홍기, 이동훈
불참 감사	0명	

4. 안 건
 - ☐ 제2022-01호 : 2021학년도 법인감사 결과 보고
 - ☐ 제2022-02호 : 법인 및 각급학교 2021학년도 결산(안)
 - ☐ 제2022-03호 : 법인 및 각급학교 2021학년도 고정자산 변동(안)
 - ☐ 제2022-04호 : 광운대학교 규정 개정(안)
 - 1) 대학원 통합학칙 개정(안)
 - 2) 직제규정 개정(안)
 - 3) 교수업적평가 규정 개정(안)
 - 4) 연구년 규정 개정(안)
 - 5) 직원인사 규정 개정(안)
 - 6) 직원보수 규정 개정(안)
 - 7) 직원복무 규정 개정(안)
 - 8) 직원승진 규정 개정(안)
 - 9) 직원고과평정 규정 개정(안)

간서명	조선영	김영만	이종민
-----	-----	-----	-----

- 10) 감사규정 개정(안)
- 11) 기획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안)
- 12) 광운발전전략위원회 규정 개정(안)
- 13)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개정(안)
- 14) 교원포상 규정 개정(안)
- 15) 장학규정 개정(안)
- 16) 광운대학교 홍보위원회 규정 개정(안)
- ☐ 제2022-05호 : 광운대학교 전임교원 복직 제청(안)
- ☐ 제2022-06호 :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개정(안) 및 행동강령 제정(안)
- ☐ 제2022-07호 : 광운대학교 교원 징계의결 결과 보고
- ☐ 제2022-08호 : 법인 일반직원 징계의결 결과 보고
- ☐ 제2022-09호 : 각급학교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안)
- ☐ 제2022-10호 :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교원 휴직 및 복직 제청(안)
- ☐ 이사회 회의록 비공개 대상 안건

5. 회의내용

☐ 성원 보고 및 개회 선언

개회 시간이 되어 조선애 간사가 참석 임원을 보고하자, 조선영 의장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하고 인사하다.

☐ 안건 제2022-01호 : 2021학년도 법인감사 결과 보고

조선영 의장은 제2022-01호 의안을 상정하고 이동훈 감사, 조선애 간사에게 의안 내용 설명을 지시하다.

이동훈 감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동법 제31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학교법인 광운학원의 2021회계연도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자, 교육부의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음을 설명함.

이동훈 감사는 내부 감사 결과 초·중·고에서 관련 법령이나 규정의 위배사항은 없었으나 수익계약 업체 선정의 타당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음을 설명하고, 향후 수익계약 체결 과정에서 작성되는 품의서 또는 기안서에 업체의 선정 배경 및 이유를 기재할

간서명		김영만	
-----	---	-----	---

수 있도록 학교법인 차원에서 제도를 보완하여 줄 것을 권고함.

조선애 감사 : 삼덕회계법인에서 실시한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다.

조선영 의장은 보고 내용을 모두 청취한 후, 처리 여부를 묻자, 오승훈 이사의 동의와 김영만 이사의 제청으로 전원 찬성하여 원안대로 접수하다.

□ 안건 제2022-02호 : 법인 및 각급학교 2021학년도 결산(안)

조선영 의장은 제2022-02호 의안을 상정하고 감사에게 의안내용 설명을 지시하다.

조선애 감사는 법인 및 각급학교 2021학년도 결산(안)에 대해 설명하다.

▪ 2021학년도 법인 및 각급학교 결산(안)

구 분	수 입(원)	지 출(원)	차인잔액(원)
법인일반업무회계	1,527,961,000	1,524,452,019	3,508,981
법 인수익사업회계	795,721,000	801,637,810	5,916,810
광운대학교 학교회계	118,376,967,669	118,376,967,669	-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학교회계	12,157,871,412	11,193,151,591	964,719,821
광운중학교 학교회계	5,778,701,572	5,538,024,939	240,676,633
남대문중학교 학교회계	6,524,510,133	6,019,383,252	505,126,881
광운초등학교 학교회계	6,132,381,102	5,880,261,650	252,119,452

조선영 의장은 보고 내용을 모두 청취한 후, 처리 여부를 묻자, 오승훈 이사의 동의와 김영만 이사의 제청으로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안건 제2022-03호 : 법인 및 각급학교 2021학년도 고정자산 변동(안)

조선영 의장은 제2022-03호 의안을 상정하고 감사에게 의안 내용 설명을 지시하다.

조선애 감사는 법인 및 각급학교 2021학년도 고정자산 변동(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 2021학년도 광운대학교 고정자산 변동내역

가. 기계기구

간서명			
-----	---	---	---

구분		전기이월 장부가액 (원)	폐기 및 취득내역				기말잔액 장부가액 (원)	비고
			물품명	대(점)	장부가액 (원)	폐기 잔존가액 (원)		
기 계 기 구	등록금 회계	25,821,652,491	냉방기 외	-1802	-3,563,906,796	219,972	24,423,981,185	폐기
			컴퓨터 외	1317	2,166,235,490	0		취득
	비등록금 회계	11,214,059,709	냉난방기 외	-74	-105,345,516	0	11,629,766,313	폐기
			컴퓨터 외	89	521,052,120	0		취득
합계		37,035,712,200					36,053,747,498	

나. 집기비품

구분		전기이월 장부가액 (원)	폐기 및 취득내역				기말잔액 장부가액 (원)	비고
			물품명	대(점)	장부가액 (원)	폐기 잔존가액 (원)		
집 기 비 품	등록금 회계	6,219,542,450	테이블 외	-2310	-372,276,514	0	6,166,208,696	폐기
			책상 외	1604	318,942,760	0		취득
	비등록금 회계	2,535,531,948	책상 외	-116	-40,701,029	0	2,606,869,919	폐기
			의자 외	163	112,039,000	0		취득
소계		8,755,074,398					8,773,078,615	

조선영 의장은 보고 내용을 모두 청취한 후, 처리 여부를 묻자, 이종민 이사의 동의와 이종수 이사의 제청으로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14:20 광운대학교 김재요 기획처장, 정석재 교무처장 입실함.)

□ 안건 제2022-04호 : 광운대학교 규정 개정(안)

조선영 의장은 제2022-04호 의안을 상정하고 김재요 기획처장 및 정석재 교무처장에게 의안 내용 설명을 지시하다.

김재요 기획처장 및 정석재 교무처장은 광운대학교 규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다.

배흥기 감사는 연구년 규정 개정(안) 내용 중 연구년 허가기준에서 책임시수 충족 여부를 제외

간서명		김영만	이종민
-----	---	-----	-----

하는 것은 교원의 기본적인 의무가 교육과 연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개진함.

조선영 의장은 직원 인사 및 보수와 관련된 규정의 경우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해 보임으로 다시 상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참석이사 전원이 동의하다.

조선영 의장은 보고 내용 및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처리 여부를 묻자, 이종민 이사의 동의와 이종수 이사의 제청으로 전원 찬성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하였음을 선포하다.

▪ 광운대학교 규정 개정(안) 심의안건

구분	안 건	심의결과	시행일자
심의 안건	대학원 통합학칙 개정(안)	원안가결	2022.04.18.
	직제규정 개정(안)	원안가결	2022.04.18.
	교수업적평가 규정 개정(안)	원안가결	2022.04.18.
	연구년 규정 개정(안)	부분가결 • 제6조(심의 및 선정) : 부결 • 제9조(보직에 대한 적용) : 가결	2022.04.18.
	직원인사 규정 개정(안)	부결	-
	직원보수 규정 개정(안)	부결	-
	직원복무 규정 개정(안)	부결	-
	직원승진 규정 개정(안)	부결	-
	직원고과평정 규정 개정(안)	부결	-

▪ 광운대학교 규정 개정(안) 보고안건 : 원안대로 접수함

※ 붙임1 : 광운대학교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시행일 : 2022.04.18.)

간서명		김영만	
-----	---	-----	---

□ 안건 제2022-05호 : 광운대학교 전임교원 복직 제청(안)

조선영 의장은 제2022-05호 의안을 상정하고 정석재 교무처장에게 의안 내용 설명을 지시하다.

정석재 교무처장은 광운대학교 전임교원 복직 건에 대해 설명하다.

▪ 광운대학교 교원 복직 대상자

소 속	성명	생년월일	제청사항		비고
			내용	일자	
광운대학교			복직	2022.05.10.	조기복직

※ 복직사유 : 파견(대통령비서실 중소벤처비서관) 종료

조선영 의장은 보고 내용을 모두 청취한 후, 처리 여부를 묻자, 이종민 이사의 동의와 이종수 이사의 제청으로 전원 찬성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하였음을 선포하다.

(15:00 광운대학교 김재요 기획처장, 정석재 교무처장 퇴실함.)

□ 안건 제2022-06호 :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개정(안) 및 행동강령 제정(안)

조선영 의장은 심의안건 제2022-06호 의안을 상정하고 간사에게 의안 내용 설명을 지시하다.

조선애 간사는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광운학원 정관을 개정하고 행동강령을 제정코자 하는 내용임을 설명하다.

조선영 의장은 보고 내용을 모두 청취한 후, 처리 여부를 묻자, 배일환 이사의 동의와 김기영 이사의 제청으로 전원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하다.

※ 붙임2 : 광운학원 정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시행일 : 2022.04.18.)

□ 제2022-07호 : 광운대학교 교원 징계의결 결과 보고

조선영 의장은 제2022-07호 의안을 상정하고 간사에게 의안 내용 설명을 지시하다.

조선애 간사는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경징계 처분된 교원에 대해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

간서명		김영만	이종민
-----	---	-----	-----

결한 내용과 처분된 결과에 대해 보고하는 내용임을 설명하다.

조선영 의장은 보고 내용을 모두 청취한 후, 처리 여부를 묻자, 배일환 이사의 동의와 김기영 이사의 제청으로 전원 찬성하여 원안대로 접수하다.

□ 제2022-08호 : 법인 일반직원 징계의결 결과 보고

조선영 의장은 제2022-08호 의안을 상정하고 간사에게 의안 내용 설명을 지시하다.

조선애 간사는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경징계 처분된 법인 일반직원에 대해 일반직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한 내용과 처분된 결과에 대해 보고하는 내용임을 설명하다.

조선영 의장은 보고 내용을 모두 청취한 후, 처리 여부를 묻자, 배일환 이사의 동의와 김기영 이사의 제청으로 전원 찬성하여 원안대로 접수하다.

□ 제2022-09호 : 각급학교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안)

조선영 이사장은 제2022-09호 의안을 상정하고 개정된 사립학교법 내용에 따라 위원회 구성 인원, 외부위원 수, 학부모 위원 포함, 특정 성 비율 등을 반영하여 각급학교별로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을 설명하다.

간서명	조선영	김영만	이종민
-----	-----	-----	-----

간서명	조성명	김영만	이종민
-----	-----	-----	-----

간서명	조성명	김영만	이종민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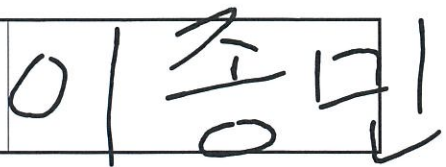
□ 제2022-10호 :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교원 휴직 및 복직 제청(안)

조선영 의장은 제2022-10호 의안을 상정하고 간사에게 의안 내용 설명을 지시하다.

조선애 간사는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교원 휴직·복직 건에 대해 설명하다.

▪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교원 휴직·복직 대상자

소 속	직위 (과목)	성명	생년월일	제청사항		비고
				내용	일자	
광운인공 지능고등 학교	교사 (영양)			명. 육아휴직(둘째) 기간: 2022.04.01. - 2023.02.28.	2022.04.01	
	교사 (영어)			명. 가사휴직 기간: 2022.04.18. - 2022.05.17.	2022.04.18	
	교사 (전문상담)			명. 복직	2022.04.01	육아휴직(첫째) 기간: 2021.10.01.- 2022.03.31.

간서명		김영만	
-----	---	-----	---

조선영 의장은 보고 내용을 모두 청취한 후, 처리 여부를 묻자, 이종민 이사의 동의와 이종수 이사의 제청으로 전원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하다.

조선영 의장은 학교법인 광운학원 및 광운대학교에 대한 교육부 감사처분 재심의 결과 통보에 따른 이행을 위해 긴급이사회 소집 건을 상정하고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아래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2022학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 : 2022.05.12.(목) 14:00

조선애 간사는 회의를 종결하기에 앞서 사립학교법 제18조의2 제4항 및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오늘 이사회의 안건 제2022-09호는 이사회 회의록 비공개 대상 안건에 해당됨을 설명하다.

간사의 설명을 들은 조선영 의장이 참석한 이사들께 의견을 묻자, 이사 전원 찬성하여 안건 제2022-09호는 이사회 회의록 공개 시 비공개하기로 의결하다.

6. 폐회

조선영 의장은 오늘의 상정안건이 원만하게 의결되었음을 확인하고, 15시 30분 폐회를 선언하다.

간서명	조선영	김영만	이종민
-----	-----	-----	-----

학교법인 광운학원 이사회

이사장 조 선 영 (서명) 이 사 이 증 수 (서명)

이 사 이 증 민 (서명) 이 사 김 기 영 (서명)

이 사 오 충 훈 (서명) 이 사 김 영 만 (서명)

이 사 배 일 환 (서명) 감 사 배 홍 기 (서명)

감 사 이 동 훈 (서명)

2022. 04. 18.

간서명	조 선 영	김영만	이 증 민
-----	-------	-----	-------

대학원 통합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법령검토)
제5조(설치학과 및 학생정원) ① 일	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에 설	제5조(설치학과 및 학생정원) ① 일	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에 설		[별표1]
치하는 학과, 학부, 전공(이하 “학	과” 라 한다) 및 입학정원은 [별표	치하는 학과, 학부, 전공(이하	“학과” 라 한다) 및 입학정원은		[별표2]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다	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 제3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	다. 다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		개정
항에 해당하는 자의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5. 3.	2, 2006. 3. 1, 2006.	10. 27, 2007. 1. 5, 2007. 8. 17,		
2007. 12. 4, 2008. 5. 1, 2008. 6.	18, 2009. 2. 3, 2009. 10. 16, 2010.	2. 9, 2010. 8. 12, 2010. 12. 7,	2011. 7. 29, 2011. 11. 9, 2012. 12.		
4, 2013. 7. 24, 2014. 2. 7, 2014.	7. 15, 2015. 2. 6, 2015. 11. 10,	2016. 1. 8, 2016. 8. 11, 2016. 11.	23, 2017. 11. 20, 2017. 12. 27,		
2018. 10. 24, 2019. 4. 17, 2019. 6.	26, 2019. 10. 23, 2020.08.26.,	2021.02.03., 2021. 6. 22, 2021. 8.	24, 2021.12.28.>		
제44조(학위종별)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학위종별은 [별표	제44조(학위종별)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학위종별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개			

간서명	조성환	김영만	이준민
-----	-----	-----	-----

현행	개정안	비고 (법령검토)
정 2005. 3. 1, 2011. 7. 29, 2011. 11. 9, 2013. 7. 24, 2014. 2. 7, 2014. 7. 15, 2014. 11. 25, 2015. 11. 10, 2016. 1. 8, 2016. 8. 11, 2016. 11. 23, 2017. 11. 20, 2017. 12. 27, 2018. 10. 24, 2019. 4. 17, 2019. 10. 23, 2021. 02. 03, 2021. 8. 24, 2021.12.28.> [별표 1] 일반대학원 설치학과, 입학정원 및 학위종별표 (별첨) [별표 2] 특수대학원 설치학과, 입학정원 및 학위종별표 (별첨)	<u>정</u> 2005. 3. 1, 2011. 7. 29, 2011. 11. 9, 2013. 7. 24, 2014. 2. 7, 2014. 7. 15, 2014. 11. 25, 2015. 11. 10, 2016. 1. 8, 2016. 8. 11, 2016. 11. 23, 2017. 11. 20, 2017. 12. 27, 2018. 10. 24, 2019. 4. 17, 2019. 10. 23, 2021. 02. 03, 2021. 8. 24, 2021.12.28., <u>2022. 4. 18</u>> [별표 1] 일반대학원 설치학과, 입학정원 및 학위종별표 (별첨) [별표 2] 특수대학원 설치학과, 입학정원 및 학위종별표 (별첨)	[별표2] 개정 [별표1] 개정 [별표2] 개정
	<u>부 칙 <2022. 4. 18></u> <u>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부칙 신설

간서명		김영만	
-----	---	-----	---

<현행> [별표 1] 일반대학원 설치학과, 입학정원 및 학위종별표

계 열	설 치 학 과	입 학 정 원						학 위 종 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 과 간 협 동 과 정	플라즈마이오디스플레이학과<신설 2005.3.1><개정 2011.7.29>	○	○	○	○	○	○	공학석사	공학박사
	범죄학과	○	○	○	○	○	○	범죄학석사	범죄학박사
	도시계획부동산학과<신설 2006.10.27> <개정2013.07.24>	-	○	-	○	-	○	-	도시계획부동산학박사 <개정2013.07.24>
	방위사업학과<신설 2007.8.17> - 경영전공<신설 2014.11.25> <개정2019.6.26>	○	○	○	○	○	○	공학석사 국방경영학석사 <신설2014.11.25> <개정2016.1.8>	공학박사 국방경영학박사 <신설2014.11.25> <개정2016.1.8>
	지능정보시스템임베디드SW공학과 <신설 2008.6.18><개정2016.8.11>	○	-	○	-	○	-	공학석사	-
	건설법무학과<신설 2009.10.16>	-	○	-	○	-	○	-	건설법무학박사
	홀로그래피콘텐츠학과<신설2012.8.21>	-	-	-	-	-	-	-	콘텐츠학박사
	교육학과<신설 2014.11.25>	-	○	-	○	-	○	-	교육학박사
	재난안전공학과<신설 2015.11.10>	○	○	○	○	○	○	공학석사	공학박사
	게임학과<신설 2018.10.24>		○		○		○	-	게임학박사
	실감융합콘텐츠학과<신설 2018.10.24>		○		○		○	콘텐츠학석사 <신설 2018.24>	콘텐츠학박사
	인공지능융합학과<신설 2019. 4. 17>	○	○	○	○	○	○	인공지능융합학석사 <신설2019. 4. 17>	인공지능융합학박사 <신설2019. 4. 17>
	ICT융합학과 <신설 2019. 4. 17><폐지 2019.10.23>							ICT융합학석사 <신설2019. 4. 17> <폐지 2019.10.23>	ICT융합학박사 <신설2019. 4. 17> <폐지 2019.10.23>
	부동산법무학과<신설 2019.10.23>		○		○		○	-	부동산법무학박사 <신설 2019.10.23>
	글로벌인문융합경영학과<신설 2021.8.24> - 글로벌비즈니스전공<신설2021.8.24> - 글로벌인문융합전공<신설 2021.8.24>					○		글로벌경영학석사 <신설 2021.8.24> 글로벌인문사회학 석사<신설 2021.8.24>	
계		6개 학과	11개 학과	6개 학과	11개 학과	8개 학과	11개 학과		
총 계		194	140	194	140	194	140		

<개정안> [별표 1] 일반대학원 설치학과, 입학정원 및 학위종별표

계 열	설 치 학 과	입 학 정 원						학 위 종 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 과 간 협 동 과 정	플라즈마이오디스플레이학과<신설 2005.3.1><개정 2011.7.29>	○	○	○	○	○	○	공학석사	공학박사
	범죄학과	○	○	○	○	○	○	범죄학석사	범죄학박사
	도시계획부동산학과<신설 2006.10.27> <개정2013.07.24>	-	○	-	○	-	○	-	도시계획부동산학박사 <개정2013.07.24>
	방위사업학과<신설 2007.8.17> - 경영전공<신설 2014.11.25> <개정2019.6.26>	○	○	○	○	○	○	공학석사 국방경영학석사 <신설2014.11.25> <개정2016.1.8>	공학박사 국방경영학박사 <신설2014.11.25> <개정2016.1.8>
	지능정보시스템임베디드SW공학과 <신설 2008.6.18><개정2016.8.11>	○	-	○	-	○	-	공학석사	-
	건설법무학과<신설 2009.10.16>	-	○	-	○	-	○	-	건설법무학박사
	홀로그래피콘텐츠학과<신설2012.8.21>	-	-	-	-	-	-	-	콘텐츠학박사
	교육학과<신설 2014.11.25>	-	○	-	○	-	○	-	교육학박사
	재난안전공학과<신설 2015.11.10>	○	○	○	○	○	○	공학석사	공학박사
	게임학과<신설 2018.10.24>		○		○		○	-	게임학박사
	실감융합콘텐츠학과<신설 2018.10.24>		○		○		○	콘텐츠학석사 <신설 2021.8.24>	콘텐츠학박사
	인공지능융합학과<신설 2019. 4. 17>	○	○	○	○	○	○	인공지능융합학석사 <신설2019. 4. 17>	인공지능융합학박사 <신설2019. 4. 17>
	ICT융합학과 <신설 2019. 4. 17><폐지 2019.10.23>							ICT융합학석사 <신설2019. 4. 17> <폐지 2019.10.23>	ICT융합학박사 <신설2019. 4. 17> <폐지 2019.10.23>
	부동산법무학과<신설 2019.10.23>		○		○		○	-	부동산법무학박사 <신설 2019.10.23>
	글로벌인문융합경영학과<신설					○		글로벌경영학석사	

간서명		김영만	이종민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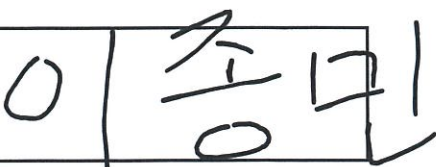
2021.8.24> - 글로벌비즈니스전공<신설 2018.2.7> - 글로벌인문융합전공<신설 2021.8.24> 메타버스융합학과 <신설 2022.4.18>							<신설 2021.8.24> 글로벌인문사회학 석사<신설 2021.8.24> 메타버스융합학석사 <신설 2022.4.18> 메타버스융합학박사 <신설 2022.4.18>
계	6개 학과	11개 학과	6개 학과	11개 학과	9개 학과	12개 학과	
총계	194	140	194	140	194	140	

<현행> [별표 2] 특수대학원 설치학과, 입학정원 및 학위종별표

대학원	학과 및 전공	입학정원(석사)			학위종별 (석사학위과정)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교육대학원	◇ 수학교육전공 ◇ 특수교육전공<신설 2014.2.7> ◇ 조기영어교육전공<개정 2011.11.9., 2016.1.8., 2019.10.23> ◇ 상담심리전공 ◇ 교정심리전공 ◇ 부모교육전공 ◇ 평생다문화교육전공<개정 2011.11.9> ◇ 언어재활·치료교육전공 <개정 2014.2.7., 2019.10.23> ◇ 생활체육교육전공 ◇ 교육공학전공 <개정 2007.1.5., 2009.2.3., 2017.11.20> ◇ 심리치료교육전공<신설 2011.11.9>	105	105	105	교육학석사(00전공)

<개정안> [별표 2] 특수대학원 설치학과, 입학정원 및 학위종별표

대학원	학과 및 전공	입학정원(석사)			학위종별 (석사학위과정)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교육대학원	◇ 수학교육전공<폐지 2022.4.18> ◇ 특수교육전공<신설 2014.2.7> ◇ 조기영어교육전공<개정 2011.11.9., 2016.1.8., 2019.10.23> ◇ 상담심리전공 ◇ 교정심리전공 ◇ 부모교육전공 ◇ 평생다문화교육전공<개정 2011.11.9> ◇ 언어재활·치료교육전공 <개정 2014.2.7., 2019.10.23> ◇ 생활체육교육전공 ◇ 교육공학전공 <개정 2007.1.5., 2009.2.3., 2017.11.20> ◇ 심리치료교육전공<신설 2011.11.9> ◇ AI융합교육전공<신설 2022.4.18>	105	105	105	교육학석사(00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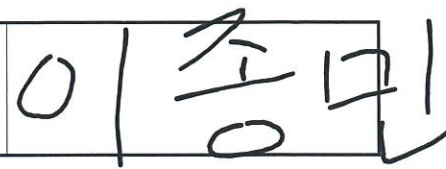
간서명		김영만	
-----	---	-----	---

직제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제3조(기구) 본 대학교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기구표 : [별표 1]) <개정 2001. 2. 28, 2002. 11. 27, 2003. 2. 12, 2004. 1. 19, 2007. 8. 17, 2008. 5. 1, 2009. 7. 27, 2009. 10. 16, 2010. 2. 9, 2010. 4. 22, 2010. 8. 12, 2010. 12. 7, 2011. 2. 8, 2011. 8. 24, 2011. 11. 9, 2011. 12. 30, 2012. 2. 8, 2012. 4. 20, 2012. 8. 21, 2013. 2. 5, 2013. 7. 24, 2013. 12. 12, 2014. 11. 25, 2016. 11. 23, 2017. 1. 25, 2017. 7. 17., 2017. 11. 20, 2017. 12. 27, 2018. 4. 20, 2018. 8. 22, 2018. 10. 24, 2019. 1. 23, 2019. 4. 17, 2019. 6. 26, 2020. 4. 16, 2021. 8. 24, 2022. 2. 8> 1. 총장 직속 기구(비서실, 교육혁신원)<개정 2017. 12. 27, 2019. 4. 17, 2022. 2. 8> 2. ~ 8. (생략) 제 2 장 기 구 제 1 절 총장, 부총장	제3조(기구) 본 대학교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기구표 : [별표 1]) <개정 2001. 2. 28, 2002. 11. 27, 2003. 2. 12, 2004. 1. 19, 2007. 8. 17, 2008. 5. 1, 2009. 7. 27, 2009. 10. 16, 2010. 2. 9, 2010. 4. 22, 2010. 8. 12, 2010. 12. 7, 2011. 2. 8, 2011. 8. 24, 2011. 11. 9, 2011. 12. 30, 2012. 2. 8, 2012. 4. 20, 2012. 8. 21, 2013. 2. 5, 2013. 7. 24, 2013. 12. 12, 2014. 11. 25, 2016. 11. 23, 2017. 1. 25, 2017. 7. 17., 2017. 11. 20, 2017. 12. 27, 2018. 4. 20, 2018. 8. 22, 2018. 10. 24, 2019. 1. 23, 2019. 4. 17, 2019. 6. 26, 2020. 4. 16, 2021. 8. 24, 2022. 2. 8, <u>2022. 4. 18</u>> 1. 총장 직속 기구(비서실, 교육혁신원, <u>인권센터</u>)<개정 2017. 12. 27, 2019. 4. 17, 2022. 2. 8, <u>2022. 4. 18</u>> 2. ~ 8. (현행과 같음) 제 2 장 기 구 제 1 절 총장, 부총장	기구표 [별표 1] 개정 총장 직속 기구에 인권센터 직제 신설

간서명		김영만	
-----	---	-----	---

현행	개정안	비고
(생략)	(현행과 같음)	
제4조의 7 (신설)	<u>제4조의 7(인권센터) 인권센터에 인권센터장을 두며 인권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인권센터 밑에 있는 소속기관 업무를 통할한다. 인권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2. 4. 18></u>	인권센터 직제 신설 (보직기준 :법적기준)
제4조의 8 (신설)	<u>제4조의 8(인권센터의 조직) 인권센터 밑에 인권·성평등상담실, 학생상담실, 장애학생지원실을 두며, 각 실에 실장, 그 밑에는 팀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22. 4. 18></u>	인권센터 직제 신설에 따른 조직
제 4 절 행정 본부	제 4 절 행정 본부	
(생략)	(생략)	
제16조의2(학생처의 조직) <조 번호 변경 2017. 1. 25><개정 2022. 2. 8> ① ~ ② (생략) ③ 학생처 밑에 학생복지팀,	제16조의2(학생처의 조직) <조 번호 변경 2017. 1. 25><개정 2022. 2. 8>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학생처 밑에 학생복지팀,	학생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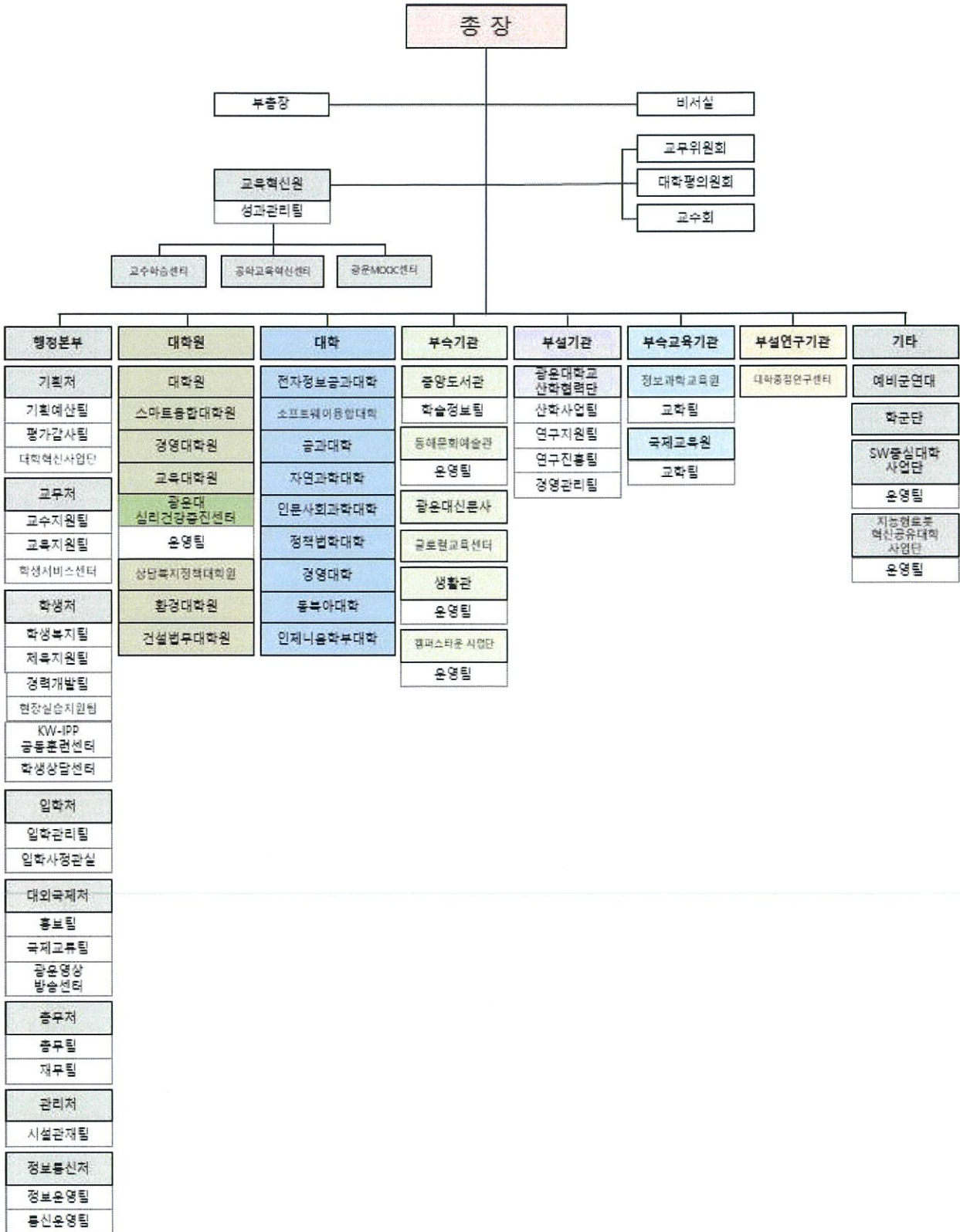
간서명		김영만	
-----	---	-----	---

현행	개정안	비고
체육지원팀, 경력개발팀, 현장실습지원팀, KW-IPP공동훈련센터, <u>학생상담센터</u>를 두고 각 팀에는 팀장을 센터에는 센터장을 둔다.<개정 2016. 8. 11, 2017. 7. 17, 2017. 12. 27, 2018. 10. 24, 2022. 2. 8> ④ <u>학생상담센터장은 학생처장의 명을 받아 학생상담센터 업무를 통할한다.</u> <개정 2013. 04. 19, 2017. 12. 27. 2022. 2. 8> ⑤ ~ ⑥ (생략)	체육지원팀, 경력개발팀, 현장실습지원팀, KW-IPP공동훈련센터를 두고 각 팀에는 팀장을 센터에는 센터장을 둔다.<개정 2016. 8. 11, 2017. 7. 17, 2017. 12. 27, 2018. 10. 24, 2022. 2. 8, <u>2022. 4. 18</u>> ④ <개정 2013. 04. 19, 2017. 12. 27. 2022. 2. 8> <u><삭제 2022. 4. 18></u> ⑤ ~ ⑥ (생략)	학생상담 센터를 총장직속 기구 인권센터 밑으로 이동
제48조(보직) ①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은 <u>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u> <개정 2004. 7. 1, 2004. 9. 1, 2016. 1. 8, 2017. 12. 27, 2019. 6. 26> ② 처장, 대학혁신사업단장, 교육혁신원장, SW중심대학사업단장, 지능형로봇 혁신공유대학 사업단장은 <u>교수, 부교수, 3급 이상 직원으로 보한다.</u><개정 2005. 11. 29, 2017. 1. 25, 2019. 6. 26, 2021. 8. 24, 2022. 2. 8>	제48조(보직) ①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 <u>인권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u> <개정 2004. 7. 1, 2004. 9. 1, 2016. 1. 8, 2017. 12. 27, 2019. 6. 26, <u>2022. 4. 18</u>> ② 처장, 대학혁신사업단장, 교육혁신원장, SW중심대학사업단장, 지능형로봇 혁신공유대학 사업단장은 <u>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 직원으로 보한다.</u><개정 2005. 11. 29, 2017. 1. 25, 2019. 6. 26, 2021. 8. 24, 2022. 2. 8, <u>2022. 4. 18</u>>	신설되는 기관의 기관장 보직기준 추가 및 문구 통일

현행	개정안	비고
③ 부속(부설)기관, 부속교육기관, 부설연구기관, 광운영상방송센터, 광운대심리건강증진센터, <u>학생상담센터</u>, 교수학습센터, 공학교육혁신센터, 광운MOOC센터, KW-IPP공동훈련센터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17. 1. 25, 2019. 6. 26> ④ ~ ⑭ (생략) [별표 1]	③ 부속(부설)기관, 부속교육기관, 부설연구기관, 광운영상방송센터, 광운대심리건강증진센터, 교수학습센터, 공학교육혁신센터, 광운MOOC센터, KW-IPP공동훈련센터, <u>인권·성평등상담실, 학생상담실, 장애학생지원실의</u>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17. 1. 25, 2019. 6. 26, <u>2022. 4. 18</u>> ④ ~ ⑭ (현행과 같음) [별표 1]	[별표 1] 개정
	<u>부 칙 <2022. 4. 18></u> <u>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u>	부칙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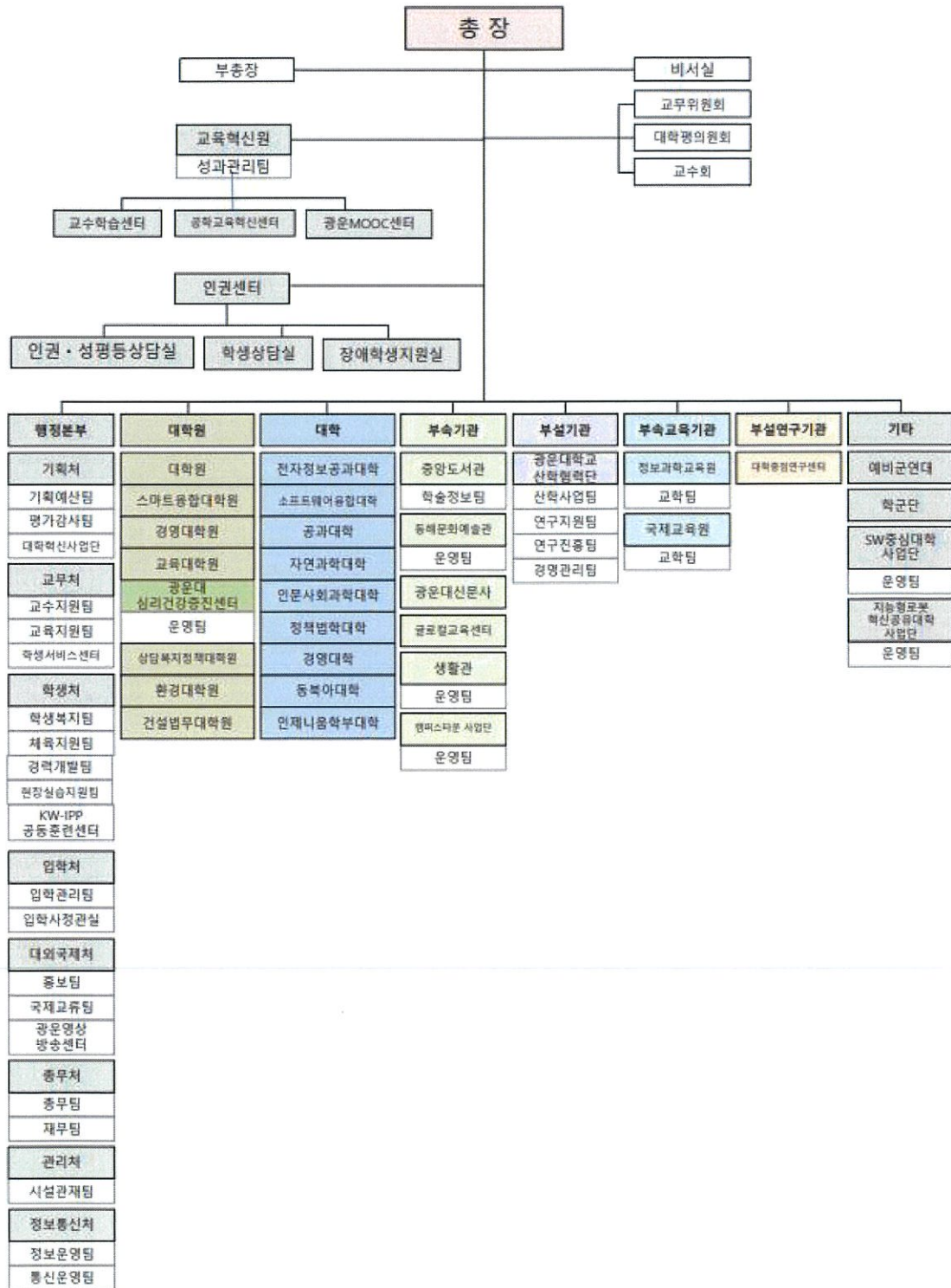
간서명		김영만	
-----	---	-----	---

<현행> [별표1]



간서명	조성환	김영만	이준민
-----	-----	-----	-----

<개정안> [별 표1]



간서명	조신영	김영만	이종민
-----	-----	-----	-----

교수업적평가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개정 사유)								
제5조(평가항목) 평가분야별 항목과 배점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 12. 7, 2011. 11. 9, 2015. 2. 27, 2016. 1. 8, 2016. 4. 20, 2016. 8. 11, 2018. 4. 20, 2020. 2. 5>		제5조(평가항목) 평가분야별 항목과 배점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 12. 7, 2011. 11. 9, 2015. 2. 27, 2016. 1. 8, 2016. 4. 20, 2016. 8. 11, 2018. 4. 20, 2020. 2. 5, <u>2022. 4. 18</u> >		[별표1] 개정								
[별표 1] 평가분야별 항목과 배점<개정 2006. 6. 1, 2009. 2. 3, 2010. 12. 7, 2011. 11. 9, 2013. 7. 24, 2015. 2. 27, 2016. 1. 8, 2016. 4. 20, 2016. 8. 11, 2018. 4. 20, 2020. 2. 5>		[별표 1] 평가분야별 항목과 배점<개정 2006. 6. 1, 2009. 2. 3, 2010. 12. 7, 2011. 11. 9, 2013. 7. 24, 2015. 2. 27, 2016. 1. 8, 2016. 4. 20, 2016. 8. 11, 2018. 4. 20, 2020. 2. 5, <u>2022. 4 .18</u> >										
1. 교육 분야 기준 <표 생략>		1. 교육 분야 기준 <표 현행과 같음>										
2. 연구 분야 기준		2. 연구 분야 기준										
분류	항 목	코 드	인정조건	점수	인정비율	분류	항 목	코 드	인정조건	점수	인정비율	
연구 분야	SCI 급	SS CI · A & HCI	10-1	IF 상위 25% 이상(Q1)	400	주저자 : 1인 100%, 2인 80%, 3인 60%, 4인이상 하단참조 • 공동저자 : 1인 100%, 2인 70%, 3인 50%.	SCI 급	SS CI · A & HCI	10-1	ICR IIF 상위 25%이상(Q1)	400	주저자 : 1인 100%, 2인 80%, 3인 60%, 4인이상 하단참조 • 공동저자 : 1인 100%, 2인 70%, 3인 50%.
			10-2	IF 상위 25% 미만~ 50%이상(Q2)	350				10-2	ICR IIF 상위 25%미만~ 50%이상(Q2)	350	
			10-3	IF 하위 50% 미만(Q3.Q4)	300				10-3	ICR IIF 하위 50%미만 (Q3.Q4)	300	
		SCI (E)	10-4	IF 상위 25% 이상(Q1)	350			10-4	ICR IIF 상위 25%이상 (Q1)	350		
			10-5	IF 상위 25% 미만~ 50%이상(Q2)	300			10-5	ICR IIF 상위 25%미만~ 50%이상(Q2)	300		
			10-6	IF 하위 50% 미만(Q3.Q4)	250			10-6	ICR IIF 하위 50%미만 (Q3.Q4)	250		
	기타 국 제	11-1	SCOPUS	(이공)125	기타 국 제		11-1	SCOPUS	(이공)125 (인)			

간서명		김영만	
-----	---	-----	---

현행					개정안					비고 (개정 사유)
				(인문)175 4인이상 하단참조				문)175 4인이상 하단참조		
	11-2	심사제도가 있는 비SCI급, 비scopus 학술지	100			11-2	심사제도가 있는 비SCI급, 비scopus 학술지	100		
※ 기타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연구 활동(42) 항목의 대학생, 직원, 교수 대상 교육 프로그램개발은 인제니움학부대학 소속 교원에게만 적용 됨<신규 2016. 8. 11> <신설>					※ 기타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연구 활동(42) 항목의 대학생, 직원, 교수 대상 교육 프로그램개발은 인제니움학부대학 소속 교원에게만 적용 됨<신규 2016. 8. 11> ※ 저서 인정 기준 <신설 2022. 4. 18> - 저서는 ISBN이 부여된 저서만을 인정함. - 저서 중 학술서적 인정은 ISBN 부가기호 첫 번째 자리 독자대상기호가 “9” 로 표기된 저서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함. - 단, 독자대상기호가 “9” 로 표기되지 않은 저서를 학술서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평가 대상자는 “학술서적 인정 사유서” 를 작성하여 소속기관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에서 학술서적 인정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함. ※ 저서 용어 정의 <신규 2013. 7. 24> - 전문학술서적 : 전공분야의 이론·학설을 정립하여 저술한 학술적 가치가 높은 학술저서를 말하며, 논문모음집, 교재 등은 인정하지 않음 - 교양학술서적 : 교양분야의 학술서적으로써 학술적 가치나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는 서적 - 역서 : 학술적 가치가 인정된 전공분야의 학술서 또는 문학작품집을 국어나 외국어로 번역·출판한 서적 - 편저 : 여러 사람의 논문이나 문예창작물 등을 편집하여 출판한 서적 <신설>					자구 추가
										자구

간서명	조신영	김영만	이종민
-----	-----	-----	-----

현행	개정안	비고 (개정사유)
<이하 생략>	<u>2.29.)인 경우는 전년도(직전 1년 전) JCR JIF(Journal Impact Factor) 적용</u> <현행과 같음>	추가
	<u>부칙</u> <u>본 규정은 202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u>	부칙 신설

간서명		김영만	
-----	---	-----	---

연구년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법령검토)
제9조(보직에 대한 적용) ① 교무위원의 보직에 재임 중인 교원은 연구년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보직 임기 만료가 6개월 미만인 자 중 제4조 제2항에 결격사유가 없고, 제7조 제2항에 해당되면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고, 교무위원 보직 임기 수행 만료 조건으로 연구년을 허가받을 수 있다. <u>교무위원으로 재발령된 경우 연구년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u> <개정 2013.04.19.> ② ~ ③ (생략)	제9조(보직에 대한 적용) ① 교무위원의 보직에 재임 중인 교원은 연구년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보직 임기 만료가 6개월 미만인 자 중 제4조 제2항에 결격사유가 없고, 제7조 제2항에 해당되면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고, 교무위원 보직 임기 수행 만료 조건으로 연구년을 허가받을 수 있다. <개정 2013.04.19., 2022. 4. 18> ② ~ ③ (생략)	교무위원 재발령 관련 자구 삭제
	<u>부 칙</u> <u>본 규정은 2022년 4월 18일 부터 시행한다.</u>	부칙 신설

간서명		김영만	이종민
-----	---	-----	-----

[붙임2] : 광운학원 정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법령검토)	
제 1 장	총 칙	제 1 장	총 칙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한다.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한다.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한다.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한다.			
1. 光云大學校	1. 光云大學校	1. 光云大學校	1. 光云大學校			
2. 光云電子工業高等學校	2. 光云人工知能高等學校(변경2022.04.18.)	2. 光云人工知能高等學校(변경2022.04.18.)	2. 光云人工知能高等學校(변경2022.04.18.)			학교 명칭 변경
3. 光云中學校	3. 光云中學校	3. 光云中學校	3. 光云中學校			
4. 南大門中學校	4. 南大門中學校	4. 南大門中學校	4. 南大門中學校			
5. 光云初等學校	5. 光云初等學校	5. 光云初等學校	5. 光云初等學校			
(변경97.12.19<대행81422-1533>)	(변경97.12.19<대행81422-1533>)	(변경97.12.19<대행81422-1533>)	(변경97.12.19<대행81422-1533>)			
6. 삭제(변경2020.04.16)	6. 삭제(변경2020.04.16)	6. 삭제(변경2020.04.16)	6. 삭제(변경2020.04.16)			
제4조(주소) ①이 법인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 20(월계동 447-1)번지에 둔다.<개정사립대학제도와-1349(2012.2.27.)>(변경2016.09.27)	제4조(주소) ①이 법인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 20(월계동 447-1)번지에 둔다.<개정사립대학제도와-1349(2012.2.27.)>(변경2016.09.27)	제4조(주소) ①이 법인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 20(월계동 447-1)번지에 둔다.<개정사립대학제도와-1349(2012.2.27.)>(변경2016.09.27)	제4조(주소) ①이 법인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 20(월계동 447-1)번지에 둔다.<개정사립대학제도와-1349(2012.2.27.)>(변경2016.09.27)			
②설치학교 주소는 다음과 같다.(신설 2016.09.27)	②설치학교 주소는 다음과 같다.(신설 2016.09.27)	②설치학교 주소는 다음과 같다.(신설 2016.09.27)	②설치학교 주소는 다음과 같다.(신설 2016.09.27)			
1. 光云大學校 :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 20	1. 光云大學校 :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 20	1. 光云大學校 :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 20	1. 光云大學校 :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 20			학교 명칭 변경
2. 光云電子工業高等學校 :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1길 24	2. 光云人工知能高等學校 :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1길 24(변경2022.04.18.)	2. 光云人工知能高等學校 :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1길 24(변경2022.04.18.)	2. 光云人工知能高等學校 :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1길 24(변경2022.04.18.)			
3. 光云中學校 :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1길 24	3. 光云中學校 :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1길 24	3. 光云中學校 :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1길 24	3. 光云中學校 :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1길 24			
4. 南大門中學校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95길 28	4. 南大門中學校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95길 28	4. 南大門中學校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95길 28	4. 南大門中學校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95길 28			
5. 光云初等學校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93	5. 光云初等學校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93	5. 光云初等學校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93	5. 光云初等學校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93			
6. 삭제(변경2020.04.16.)	6. 삭제(변경2020.04.16.)	6. 삭제(변경2020.04.16.)	6. 삭제(변경2020.04.16.)			

간서명	조신영	김영만	이종민
-----	-----	-----	-----

현행	개정안	비고 (법령검토)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23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5년 2. <u>감사 3년</u> ②삭제(변경2021.03.09) 제25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⑥ <생략>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신설06.10.13)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u>5년</u>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로부터 <u>5년</u>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u>3년</u>이 경과한 자 제26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임하여 취임한다.(개정06.10.13)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23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5년 2. <u>감사 3년(단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u>(변경2021.03.09)(<u>변경2022.04.18.</u>) ②삭제(변경2021.03.09) 제25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⑥ <현행과 같음>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신설06.10.13)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u>10년</u>이 경과한 자(<u>변경2022.04.18.</u>)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로부터 <u>10년</u>이 경과한 자(<u>변경2022.04.18.</u>)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u>6년</u>이 경과한 자(<u>변경2022.04.18.</u>) 제26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임하여 취임한다.(개정06.10.13)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사립학교법 제20조 내용 반영 사립학교법 제21조 제7항 개정 (2021.09.24)

간서명		김영만	
-----	---	-----	---

현행	개정안	비고 (법령검토)
③이사장은 학교법인 광운학원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변경07.12.17) 제30조(임원의 겸직 금지) <신설> ①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의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②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신설>	③ <삭제>(변경2022.04.18.) 제30조(임원의 겸직 금지) ①이사장은 학교법인 광운학원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신설2022.04.18.) ②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의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변경2022.04.18.) ③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변경2022.04.18.) 제30조의 3(임원의 친족 교직원 공개) 학교법인의 임원은 본인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이 있는 경우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법인은 이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신설 2022.04.18.)	제30조 제1항으로 이동 제26조 제3항에서 이동 <항 번호 변경> <항 번호 변경> 사립학교법 제72조3 신설 (2021.09.24)

간서명		김영만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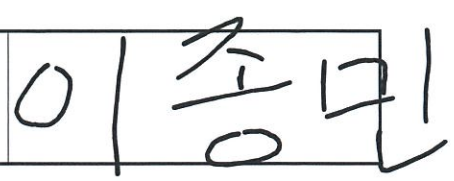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비고 (법령검토)
제 4 장 수익사업 제35조의 3(수익사업의 명칭) 제35조의 2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경영한다. 1~6. <생략> <신설> 7. (주)광운홀딩스(신설2020.10.28.) 제35조의 4(수익사업체의 주소) 제35조의 3의 사업장의 주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98.4.24<대행81422-284>) 1~6. <생략> <신설> 7. (주)광운홀딩스 : 서울시 노원구 광운로 20(신설2020.10.28)	제 4 장 수익사업 제35조의 3(수익사업의 명칭) 제35조의 2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경영한다. 1~6. <현행과 같음> 7. 동해빌딩(신설2022.04.18.) 8. (주)광운홀딩스(신설2020.10.28.)(<u>변경</u> 2022.04.18.) 제35조의 4(수익사업체의 주소) 제35조의 3의 사업장의 주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98.4.24<대행81422-284>) 1~6. <현행과 같음> 7. 동해빌딩 :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로 47 (신설2022.04.18.) 8. (주)광운홀딩스 : 서울시 노원구 광운로 20(신설2020.10.28.)(<u>변경</u>2022.04.18.)	수익사업체 추가 <호 번호 변경> 수익사업체 주소 추가 <호 번호 변경>
제 5 장 해 산 제36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u>교육인적자원부장관</u>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u>변경</u>97.12.19<대행81422-1533>)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u>교육인적자원부장관</u>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제 5 장 해 산 제36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u>관할청</u>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u>변경</u>97.12.19<대행81422-1533>)(<u>변경</u> 2022.04.18.)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u>관할청</u>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u>변경</u>2022.04.18.)	자구수정 자구수정

간서명		김영만	
-----	---	-----	---

현행	개정안	비고 (법령검토)
제 6 장 교 직 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면 제39조의 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①~⑨ <생략> ⑩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u>공개전형에 의한다.</u>(신설 06.10.13)	제 6 장 교 직 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면 제39조의 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①~⑨ <현행과 같음> ⑩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u>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u> 공개전형에 의한다.(신설06.10.13)(<u>변경2022.04.18.</u>)	사립학교법 제53조2 제11항 신설 (2021.09.24)
제 6 장 교 직 원 제 1 절 교 원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제47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u>단, 초등학교는 제외한다.</u> (변경97.12.19<대행 81422-1533>)(<u>변경2020.04.16.</u>)	제 6 장 교 직 원 제 1 절 교 원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제47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변경97.12.19 <대행 81422-1533>)(<u>변경2020.04.16.</u>)(<u>변경 2022.04.18.</u>)	사립학교법 제53조의4 제2항 개정 (2021.08.10)

간서명		김영만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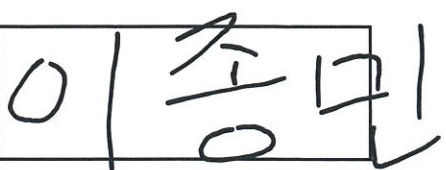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비고 (법령검토)
제 6 장 교직원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5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생략> ②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신설06.10.13) <신설> ③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신설06.10.13)(변경2015.11.10.) ④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신설06.10.13) ⑤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신설06.10.13)	제 6 장 교직원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5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징계는 <u>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신설06.10.13)(<u>변경2022.04.18.</u>) ③강등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신설2022.04.18.) ④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신설06.10.13)(변경2015.11.10)(<u>변경2022.04.18.</u>) ⑤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신설06.10.13) ⑥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신설06.10.13)(<u>변경2022.04.18.</u>)	사립학교법 제61조 개정 (2021.08.10) <항 번호 변경> <항 번호 변경> <항 번호 변경>

간서명		김영만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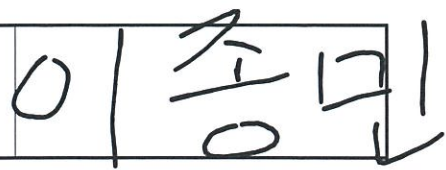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비고 (법령검토)
제 6 장 교 직 원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6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략> ②교원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두며 <u>5인</u>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 항 제2호의 외부위원을 <u>최소 1명 이상 포함</u>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 이사인 위원의 수가 전체위원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변경2016.09.27)(변경2016.10.17)(변경2020.04.16) 1. 해당학교 교원 또는 학교법인 이사 2. 외부위원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법인 및 설치·경영학교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이사장의 추천을 받은 자(신설2016.09.27.)(변경2016.10.17)(변경2020.04.16)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다른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제 6 장 교 직 원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회 제56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교원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두며 <u>위원장 1명을 포함한 9인</u>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 항 제2호의 외부위원을 <u>최소 2명 이상 포함</u>(「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우, 제2호 라.목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 이사인 위원의 수가 전체위원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으며, <u>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수를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된다</u>.(변경2016.09.27)(변경2016.10.17)(변경2020.04.16)(변경2022.04.18) 1. 해당학교 교원 또는 학교법인 이사 2. 외부위원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법인 및 설치·경영학교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이사장의 추천을 받은 자(신설2016.09.27.)(변경2016.10.17)(변경2020.04.16)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다른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사립학교법 제62조 개정 (2021.09.24.)

간서명		김영만	
-----	---	-----	---

현행	개정안	비고 (법령검토)
<u><신설></u>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④ <생략>	<u>라.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u>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다)(신설2022.04.18) 마.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변경2022.04.18.) ③~④ <현행과 같음>	<목 번호 변경>
제61조(징계의결) ① <생략> ②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u>임용권자</u>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61조(징계의결) ① <현행과 같음> ②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u>임용권자 및 관할청</u>에게 통고하여야 한다.(변경2022.04.18)	사립학교법 제66조 제2항 개정 (2021.09.24)
제 6 장 교 직 원 제 4 절 사무직원 제79조(자격)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이하“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변경2014.2.7) <u>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u> 2~7. <생략>	제 6 장 교 직 원 제 4 절 사무직원 제79조(자격)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이하“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변경2014.2.7) <u>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변경2022.04.18.) 2~7. <현행과 같음>	사립학교법 제70조3 제3항 개정 (2021.09.24.)

간서명			
-----	---	---	---

현행	개정안	비고 (법령검토)
제2절 대학교 제86조(총장 등) ①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대학교에 3인의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부교수 및 특임교수로 겸보한다.(개정2011.11.29<사립대학제도과-7058>),(개정2012.02.27<사립대학제도과-1349>) ④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총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비서실을 두며 실장은 <u>부참사 이상</u>으로 보한다.(신설97.12.19<대행81422-1533>)(변경2017.8.22) ⑥총장 직속 기구로 <u>교육혁신원과 대학혁신사업단을 두며 교육혁신원장과 대학혁신사업단장은 부교수 이상 교원 또는 부참여 이상의 직원으로</u> 보한다.(신설2018.02.05.)(변경2019.4.17.) 제87조(하부조직) ①대학교에 기획처, 교무처, <u>학생복지처</u>, 입학처, 대외국제처, 총무처, 관리처, 정보통신처를 둔다.(변경 04.10.04)(변경 06.01.04)(변경 06.11.21)(변경10.08.12)(변경13.02.05)	제2절 대학교 제86조(총장 등) ①~④ <현행과 같음> ⑤총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비서실을 두며 실장은 <u>5급 이상 직원</u>으로 보한다.(신설97.12.19<대행81422-1533>)(변경2017.8.22.)(<u>변경2022.04.18.</u>) ⑥총장 직속 기구로 <u>교육혁신원을 두며 교육혁신원에는 성과관리팀 및 교수학습센터, 공학교육혁신센터, 광운MOOC센터를 두고,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각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교육혁신원장은 부교수 이상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u> 보한다.(신설2018.02.05.)(변경2019.4.17.)(<u>변경2022.04.18.</u>) 제87조(하부조직) ①대학교에 기획처, 교무처, <u>학생처</u>, 입학처, 대외국제처, 총무처, 관리처, 정보통신처를 둔다.(변경 04.10.04)(변경 06.01.04)(변경 06.11.21)(변경 10.08.12)(변경13.02.05)(<u>변경2022.04.18.</u>)	광운대학교 직제개편 및 직급명칭 변경사항 반영

간서명		김영만	
-----	---	-----	---

현행	개정안	비고 (법령검토)
②처장은 교수, 부교수, <u>참여 또는 부참여</u>로 보한다. ③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 부처장은 교수, 부교수, <u>참여 또는 부참여</u>로 보한다.(개정 2011.8.24) ④기획처에 <u>예산조정팀과 기획평가팀</u>을 두며, 각 팀장은 부참사 이상으로 보한다.(변경06.01.04<사립대학지원과-78>)(변경 2013.07.24.)(변경2016.09.27) ⑤교무처에 교수지원팀과 교육지원팀을 두며, 각 팀장은 <u>부참사 이상</u>으로 보한다.(변경04.05.07<사학-1188>)(변경 07.09.06)(변경13.02.05)(변경2013.07.24.) ⑥학생복지처에 <u>인재개발원, 학생복지팀, 학생상담센터</u>를 두며, 인재개발원에는 KW-IPP공동훈련센터, <u>경력개발팀, 현장실습지원팀</u>을 두고, 인재개발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참여 이상의 직원으로, 각 팀장은 부참사 이상으로,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참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변경 06.01.04)(변경06.11.21)(변경2010.8.12.)(2013.07.24.)(변경2017.8.22.)(변경 2018.02.05)(변경2018.10.24) ⑦입학처에 입학관리팀과 입학사정관실을 두며, 팀장은 <u>부참사 이상</u>으로 보한다.(변경06.01.04<사립대학지원과-78>)(개정	②처장은 교수, 부교수, <u>3급 이상 직원으로 보한다.</u>(변경2022.04.18.) ③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 부처장은 교수, 부교수, <u>3급 이상 직원으로 보한다.</u>(개정 2011.8.24)(변경2022.04.18.) ④기획처에 <u>기획예산팀, 평가감사팀, 대학혁신사업단</u>을 두며, 대학혁신사업단에는 운영팀을 두고, 각 팀장은 <u>5급 이상의 직원으로, 대학혁신사업단장은 부교수 이상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u>(변경06.01.04<사립대학지원과-78>)(변경 2013.07.24.)(변경 2016.09.27.)(변경2022.04.18.) ⑤교무처에 교수지원팀과 교육지원팀을 두며, 각 팀장은 <u>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u>(변경04.05.07<사학-1188>)(변경 07.09.06)(변경13.02.05)(변경2013.07.24.)(변경2022.04.18.) ⑥학생처에 <u>학생복지팀, 체육지원팀, 경력개발팀, 현장실습지원팀, KW-IPP공동훈련센터, 학생상담센터</u>를 두며, KW-IPP공동훈련센터에는 운영팀을 두고, 각 팀장은 <u>5급 이상의 직원으로, 각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u>(변경 06.01.04)(변경06.11.21)(변경 2010.8.12.)(2013.07.24.)(변경2017.8.22.)(변경 2018.02.05)(변경2018.10.24.)(변경2022.04.18.) ⑦입학처에 입학관리팀과 입학사정관실을 두며, 팀장은 <u>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u>(변경06.01.04<사립대학지원과	광운대학교 직제개편 및 직급명칭 변경사항 반영

간서명		김영만	
-----	---	-----	---

현행	개정안	비고 (법령검토)
2012.02.08)(변경2013.07.24) ⑧대외국제처에 홍보팀, 국제교류팀, 광운영상방송센터를 두며, 팀장은 <u>부참사 이상</u>으로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u>부참여 이상</u>의 직원을 보한다.(항신설2010.8.12)(개정2012.02.08)(변경13.02.05)(변경2013.07.24)(변경2018.10.24) ⑨삭제(신설06.01.04<사립대학지원과-78>)(항변경2010.8.12)(변경13.02.05) ⑩총무처에 총무팀과 재무팀을 두며, 각 팀장은 <u>부참사 이상</u>으로 보한다.(항변경2010.8.12)(변경2013.07.24) ⑪관리처에 시설관재팀을 두며, 팀장은 <u>부참사 이상</u>으로 보한다.(항변경2010.8.12)(변경2013.07.24) ⑫정보통신처에 정보운영팀과, 통신운영팀을 두며, 각 팀장은 <u>부참사 이상</u>으로 보한다.(변경 04.10.04<사학지원과-4241>)(변경 06.01.04<사립대학지원과-78>)(변경2013.07.24) ⑬각 부서의 사무분장은 따로 학교의 장이 정한다.(조변경01.04.30<대재81422-536>) ⑭삭제(항변경2010.8.12.) 제87조의 2(단과대학 등의 하부조직) ①대학교의 단과대학에 교학팀을, 대학원에 교학부를 두며 교학부 밑에 교학팀을 둔다.(변경2013.07.24) ②교학부장은 조교수이상 교원으로 보하고, 교학팀장은 <u>부참사 이상</u>으로 보한다.(변경2013.07.24)	-78>)(개정2012.02.08)(변경2013.07.24)(<u>변경2022.04.18.</u>) ⑧대외국제처에 홍보팀, 국제교류팀, 광운영상방송센터를 두며, 팀장은 <u>5급 이상의 직원</u>으로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u>3급 이상의 직원</u>을 보한다.(항신설2010.8.12)(개정2012.02.08)(변경13.02.05)(변경2013.07.24)(변경2018.10.24)(<u>변경2022.04.18.</u>) ⑨삭제(신설06.01.04<사립대학지원과-78>)(항변경2010.8.12)(변경13.02.05) ⑩총무처에 총무팀과 재무팀을 두며, 각 팀장은 <u>5급 이상의 직원</u>으로 보한다.(항변경2010.8.12)(변경2013.07.24)(<u>변경2022.04.18.</u>) ⑪관리처에 시설관재팀을 두며, 팀장은 <u>5급 이상의 직원</u>으로 보한다.(항변경2010.8.12)(변경2013.07.24) (<u>변경2022.04.18.</u>) ⑫정보통신처에 정보운영팀과, 통신운영팀을 두며, 각 팀장은 <u>5급 이상의 직원</u>으로 보한다.(변경 04.10.04<사학지원과-4241>)(변경 06.01.04<사립대학지원과-78>)(변경2013.07.24)(<u>변경2022.04.18.</u>) ⑬ <현행과 같음> ⑭ <현행과 같음> 제87조의 2(단과대학 등의 하부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교학부장은 조교수이상 교원으로 보하고, 교학팀장은 <u>5급 이상의 직원</u>으로 보한다.(변경2013.07.24)(<u>변경2022.04.18.</u>)	광운대학교 직제개편 및 직급명칭 변경사항 반영

간서명		김영만	
-----	---	-----	---

현행	개정안	비고 (법령검토)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학교의 장이 정한다.(변경 97.12.19<대행81422-1533>) 제88조(부속시설) ①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②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조교수 이상 교원이나 <u>참여 또는 부참여로</u> 보한다.(변경97.12.19<대행81422-1533>) ③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변경04.5.7<사학-1188>) ④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교원 또는 <u>참사로</u>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학교의 장이 정한다.(변경97.12.19<대행81422-1533>) 제89조(도서관) ①중앙도서관에 <u>정보자료팀과 정보봉사팀</u>을 두며 각 팀장은 <u>부참사 이상으로</u> 보한다.(변경97.12.19<대행81422-1533>)(변경98.4.24<대행81422-284>)(변경2013.07.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학교의 장이 정한다.(변경97.12.19<대행81422-1533>)	③ <현행과 같음> 제88조(부속시설) ① <현행과 같음> ②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조교수 이상 교원이나 <u>3급 이상의 직원으로</u> 보한다.(변경97.12.19<대행81422-1533>)(<u>변경2022.04.18.</u>) ③ <현행과 같음> ④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교원 또는 <u>4급 이상의 직원</u>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학교의 장이 정한다.(변경97.12.19<대행81422-1533>)(<u>변경2022.04.18.</u>) 제89조(도서관) ①중앙도서관에 <u>학술정보팀</u>을 두며 팀장은 <u>5급 이상의 직원으로</u> 보한다.(변경97.12.19<대행81422-1533>)(변경98.4.24<대행81422-284>)(변경2013.07.24.)(<u>변경2022.04.18.</u>) ② <현행과 같음>	

간서명		김영만	
-----	---	-----	---

현행	개정안	비고 (법령검토)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제97조(정원) ①법인 및 각급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과 같이 한다. 단, 각 직급별 세부 정원은 이사회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06.10.10).(개정 2011.8.24)(개정2011.11.09)(개정 2012.8.21)(변경2014.2.7)(변경2017.2.22)(변경 2020.04.16) ② <생략>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제97조(정원) ①법인 및 각급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과 같이 한다. 단, 각 직급별 세부 정원은 이사회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06.10.10).(개정 2011.8.24)(개정2011.11.09)(개정 2012.8.21)(변경2014.2.7)(변경2017.2.22)(변경 2020.04.16)(변경2022.04.18) ② <현행과 같음>	[별표1] 변경
제 11 장 보 칙 <신설> 제143조 (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제 11 장 보 칙 제143조(청렴의무 등) ① 법인 및 각급학교의 임원 및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2022.04.18) ② 제1항의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신설2022.04.18) 제144조 (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변경 2022.04.18)	사립학교법 제72조의4 신설 (2021.09.24) <조 번호 변경>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간서명		김영만	
-----	---	-----	---

현행	개정안	비고 (법령검토)																																																																																																				
[별표1](변경2020.04.16.) 법인 사무조직 정원 <table><tr><td>총계</td><td>7명</td></tr><tr><td>일 반 직</td><td>7명</td></tr><tr><td>2급 (참 여)</td><td>1명</td></tr><tr><td>3급 (부 참 여)</td><td>1명</td></tr><tr><td>4급 (참 사)</td><td>1명</td></tr><tr><td>5급 (부 참 사)</td><td>1명</td></tr><tr><td>8급 (서 기)</td><td>1명</td></tr><tr><td>9급 (부 서 기)</td><td>2명</td></tr></table> 광운대학교 일반직원 정원 <table><tr><td>총계</td><td>190명</td></tr><tr><td>사 무 직</td><td>119명</td></tr><tr><td>2급 (참 여)</td><td>3명</td></tr><tr><td>3급 (부 참 여)</td><td>6명</td></tr><tr><td>4급 (참 사)</td><td>8명</td></tr><tr><td>5급 (부 참 사)</td><td>17명</td></tr><tr><td>6급 (주 사)</td><td>18명</td></tr><tr><td>7급 (부 주 사)</td><td rowspan="3">67명</td></tr><tr><td>8급 (서 기)</td></tr><tr><td>9급 (부 서 기)</td></tr><tr><td>기 술 직</td><td>71명</td></tr><tr><td>2급</td><td>1명</td></tr><tr><td>3급</td><td>3명</td></tr><tr><td>4급</td><td>6명</td></tr><tr><td>5급</td><td>12명</td></tr><tr><td>6급</td><td>19명</td></tr><tr><td>7급</td><td rowspan="3">30명</td></tr><tr><td>8급</td></tr><tr><td>9급</td></tr></table>	총계	7명	일 반 직	7명	2급 (참 여)	1명	3급 (부 참 여)	1명	4급 (참 사)	1명	5급 (부 참 사)	1명	8급 (서 기)	1명	9급 (부 서 기)	2명	총계	190명	사 무 직	119명	2급 (참 여)	3명	3급 (부 참 여)	6명	4급 (참 사)	8명	5급 (부 참 사)	17명	6급 (주 사)	18명	7급 (부 주 사)	67명	8급 (서 기)	9급 (부 서 기)	기 술 직	71명	2급	1명	3급	3명	4급	6명	5급	12명	6급	19명	7급	30명	8급	9급	[별표1](변경2020.04.16.)(변경2022.04.18.) 법인 사무조직 정원 <table><tr><td>총계</td><td>7명</td></tr><tr><td>일 반 직</td><td>7명</td></tr><tr><td>2급</td><td>1명</td></tr><tr><td>3급</td><td>1명</td></tr><tr><td>4급</td><td>1명</td></tr><tr><td>5급</td><td>1명</td></tr><tr><td>8급</td><td>1명</td></tr><tr><td>9급</td><td>2명</td></tr></table> 광운대학교 일반직원 정원 <table><tr><td>총계</td><td>190명</td></tr><tr><td>사 무 직</td><td>119명</td></tr><tr><td>2급</td><td>3명</td></tr><tr><td>3급</td><td>6명</td></tr><tr><td>4급</td><td>8명</td></tr><tr><td>5급</td><td>17명</td></tr><tr><td>6급</td><td>18명</td></tr><tr><td>7급</td><td rowspan="3">67명</td></tr><tr><td>8급</td></tr><tr><td>9급</td></tr><tr><td>기 술 직</td><td>71명</td></tr><tr><td>2급</td><td>1명</td></tr><tr><td>3급</td><td>3명</td></tr><tr><td>4급</td><td>6명</td></tr><tr><td>5급</td><td>12명</td></tr><tr><td>6급</td><td>19명</td></tr><tr><td>7급</td><td rowspan="3">30명</td></tr><tr><td>8급</td></tr><tr><td>9급</td></tr></table>	총계	7명	일 반 직	7명	2급	1명	3급	1명	4급	1명	5급	1명	8급	1명	9급	2명	총계	190명	사 무 직	119명	2급	3명	3급	6명	4급	8명	5급	17명	6급	18명	7급	67명	8급	9급	기 술 직	71명	2급	1명	3급	3명	4급	6명	5급	12명	6급	19명	7급	30명	8급	9급	별표 변경 직급명칭 삭제 직급명칭 삭제 산하기관 순서 변경
총계	7명																																																																																																					
일 반 직	7명																																																																																																					
2급 (참 여)	1명																																																																																																					
3급 (부 참 여)	1명																																																																																																					
4급 (참 사)	1명																																																																																																					
5급 (부 참 사)	1명																																																																																																					
8급 (서 기)	1명																																																																																																					
9급 (부 서 기)	2명																																																																																																					
총계	190명																																																																																																					
사 무 직	119명																																																																																																					
2급 (참 여)	3명																																																																																																					
3급 (부 참 여)	6명																																																																																																					
4급 (참 사)	8명																																																																																																					
5급 (부 참 사)	17명																																																																																																					
6급 (주 사)	18명																																																																																																					
7급 (부 주 사)	67명																																																																																																					
8급 (서 기)																																																																																																						
9급 (부 서 기)																																																																																																						
기 술 직	71명																																																																																																					
2급	1명																																																																																																					
3급	3명																																																																																																					
4급	6명																																																																																																					
5급	12명																																																																																																					
6급	19명																																																																																																					
7급	30명																																																																																																					
8급																																																																																																						
9급																																																																																																						
총계	7명																																																																																																					
일 반 직	7명																																																																																																					
2급	1명																																																																																																					
3급	1명																																																																																																					
4급	1명																																																																																																					
5급	1명																																																																																																					
8급	1명																																																																																																					
9급	2명																																																																																																					
총계	190명																																																																																																					
사 무 직	119명																																																																																																					
2급	3명																																																																																																					
3급	6명																																																																																																					
4급	8명																																																																																																					
5급	17명																																																																																																					
6급	18명																																																																																																					
7급	67명																																																																																																					
8급																																																																																																						
9급																																																																																																						
기 술 직	71명																																																																																																					
2급	1명																																																																																																					
3급	3명																																																																																																					
4급	6명																																																																																																					
5급	12명																																																																																																					
6급	19명																																																																																																					
7급	30명																																																																																																					
8급																																																																																																						
9급																																																																																																						

간서명		김영만	
-----	---	-----	---

현행		개정안		비고 (법령검토)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사무조직 정원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사무조직 정원		학교명칭 변경	
총 계	34 명	총 계	34 명		
일반직	28 명	일반직	28 명		
5급 (부참사)	1 명	5급	1 명		
6급 (주사)	1 명	6급	1 명		
7급 (부주사)	3 명	7급	3 명		
8급 (서기)	6 명	8급	6 명		
9급 (부서기)	17 명	9급	17 명		
기술직	6 명	기술직	6 명		
6급 (사서)	1 명	6급	1 명		
7급 (실험기사)	4 명	7급	4 명		
8급 (사서보)	1 명	8급	1 명		
광운중학교 사무조직 정원		광운중학교 사무조직 정원			직급명칭 삭제 산하기관 순서 변경
총 계	5 명	총 계	5 명		
일반직	5 명	일반직	5 명		
6급 (주사)	1 명	6급	1 명		
8급 (서기)	1 명	8급	1 명		
9급 (부서기)	3 명	9급	3 명		
남대문중학교 사무조직 정원		남대문중학교 사무조직 정원			
총 계	5 명	총 계	5 명		
일반직	5 명	일반직	5 명		
6급 (주사)	1 명	6급	1 명		
8급 (서기)	1 명	8급	1 명		
9급 (부서기)	3 명	9급	3 명		
광운초등학교 사무조직 정원		광운초등학교 사무조직 정원			
총 계	16 명	총 계	16 명		
일반직	16 명	일반직	16 명		
5급 (부참사)	1 명	5급	1 명		
6급 (주사)	1 명	6급	1 명		
7급 (부주사)	2 명	7급	2 명		
8급 (서기)	2 명	8급	2 명		
9급 (부서기)	10 명	9급	10 명		